찾아오시는 길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02) 970-8482 을지대학교병원 | 042) 259-1222 홈페이지 | www.emc.ac.kr

통합콜센터 1899-0001

예약상담시간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EMC 을지대학교의료원 (교)을지재단

을지대학교(대전캠퍼스) |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 을지대학교병원 |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 범석학술장학재단 | 을지인력개발원 | 을지생명과학연구소 | 을지재단빌딩

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발급 요청 시 환자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진료기록 사본발급 Q & A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이므로,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부모)의 동의 없이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1. 열람요청인(조부모) 신분증
- 2. 친족관계 확인서류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방법은?

- ▲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근거서류와 자필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형태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 단, 서류위조의 경우에는 위조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위반, 서명위조-형법 제238조 위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지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본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하시면 사본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지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본인인데 오늘 신분증을 안 가져 왔어요. 사본발급이 가능한가요?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Hospital Information
Team







의료정보팀

진료기록 사본발급

EMC을지대학교의료원



진료기록 사본발급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전료기록 시본발급 시 비용과 안내시항

진료기록 사본발급 절차

사본발급 창구 해당 의사 신분증 및 사본발급 진료과 , 확인 , 구비서류 , 비용 신청 (사본발급 제출 수납 후 신청 (본관 1층 수령 사본발급 창구)

진료기록 사본발급 관련 법규

- 의료법 제 21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5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

- 동의서에는 환자본인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위임장에는수임인과 위임인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필 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급은 불가합니다.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을지병원 홈페이지(www.eulji.or.kr), 을지대학교병원 홈페이지(www.emc.ac.kr), 혹은 보건복지부(www.mw.go.kr)에서 다운로 드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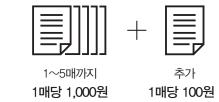
신청자	환자으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환자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학생증, 여권 등)
	환자 만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학생증, 여권 등)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대리인 • 형제 • 자매 • 보험회사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학생증, 여권 등)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확필 서명한 위임장 7.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해외체류, 수감 중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군복무 중인 경우	한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병적증명서(동사무소, 병무청 발급) 또는 복무확인서(부대발급)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지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진료기록 사본발급 비용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 *영상검사 및 특수검사의 이미지(사진) 등을 저장매체로 발급 시 비용은 별도 산정됩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진료기록은 비밀문서입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진료기록의 내용은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환자 외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